

서울창업센터 관악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228
------	------

2022. 6. 15.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2년 5월 27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08회 정례회】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22. 6. 1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

II. 제안설명의 요지(황보연 경제정책실장)

1. 제안이유

가. 서울시는 관악에 집적된 우수한 인재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성장동력 분야의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고자 2020년 7월부터 「서울창업센터 관악」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나.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이 2022년 8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역량있는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유치·사업화, 판로개척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 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 위탁시설 개요

시 설 명	서울창업센터 관악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545(봉천동 1662-7)
시설규모	대지 327.4㎡, 건물 993.86㎡(1동)
시설용도	창업지원시설(입주공간, 공유공간, 회의공간 등)

나. 사업개요

- 위탁사무 : 서울창업센터 관악 운영
- 위탁기간 : 2년 4개월(2022.9.1.~2024.12.31.)
- 위탁유형 : 시설형 민간위탁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548백만원(2022년 예산)

다. 민간위탁(재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18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 추진경위

- 2019. 9. : 제289회 임시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2020. 6. :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 민간위탁 협약체결
- 2022. 5. :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개최·의결(재위탁 조건부 동의)
- 2022. 5. : 민간위탁 재위탁 방침 수립

○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필요성

- 서울창업센터 관악은 관악에 집적된 인재와 기술을 활용하여 유망 창업기업의 사업화, 민간 VC 활용 투자유치 연계, 판로개척 등 창업기업의 육성 업무를 수행해 왔음.
- 2022년 관악구 낙성대동 등 8개 행정동이 “관악S밸리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는 등 인근 대학의 캠퍼스타운, 시·자치구 창업지원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이 보다 높아졌음.
- 이에 산학 및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신성장동력 기업 육성에 탁월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라.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서울창업센터 관악의 입주기업 보육 등 사업추진 전반

- 입주기업 심사·선발 등 창업기업 보육지원
- 운영 활성화를 위한 창업보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 산업간 융합 등 신성장동력 분야 창업지원을 위한 기획, 관리, 홍보 등
- 졸업기업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 산·학·연 협력을 통한 창업지원 네트워크 구축방안 수립
 - 우수대학(서울대, 중앙대, 숭실대 등)이 입지한 지역특성 활용 창업 활성화 방안
 - 창업공간 및 사업화 프로그램 지원, 민간 VC 투자유치, 인근 창업 지원센터 연계방안
- 서울창업센터 관악의 관리 및 운영 전반
 - 안전대책 수립, 재난대책 매뉴얼 작성 등 시설물 안전관리 총괄
 - 청소, 경비 및 시설 유지보수 총괄 등(안전점검, 보안관리 등)
- 기타 위·수탁사무와 관련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한 사항

마.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2022.5.12. 개최)심의 결과 : 적정(조건이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18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②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2년 민간위탁금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동의안의 개요

- 동의안은 창업활동 지원시설인 ‘서울창업센터 관악’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2022.8.31.)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¹⁾에 따라 재위탁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나. 서울창업센터 관악 개요

- 서울시는 관악에 집적된 우수한 인재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AI(인공지능), 빅데이터, 융복합기술 등 신성장 분야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창업지원 시설인 ‘서울창업센터 관악’ (이하 “관악센터”)을 조성해 2020년 7월부터 한국능률협회에 위탁운영 중에 있음.
- 관악센터는 창업 7년 미만의 신성장 동력 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엑셀러레이팅, 멘토링·컨설팅, 대기업과의 협업 프로그램 지원, 입주공간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서울창업센터 관악 시설현황 >

- 위치 : 관악구 봉천로 545(봉천동 1662-7)
- 규모 : 연면적 993.86㎡(지하1층~지상5층),
대지 327.4㎡
※ 신축('98.), 리모델링('20.)
- 구성 : 보육공간(15개실), 공유오피스, 회의실,
관리사무실, 지상주차장 등



1) 지난해 9월 30일 개정된 조례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의회 동의 경과기간(6년)에 상관없이 재위탁의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 관악센터 인근 8개동(낙성대동·인현동·행운동·대학동 등) 0.67km²가 2022년 1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관악S밸리 벤처기업육성촉진 지구’로 지정되면서 인근 대학과 연구소, 중소벤처기업 및 창업지원 시설과의 유기적 연계와 네트워킹의 필요성이 높아졌음.
- 입주사들의 지난해 매출액은 34억 3천 1백만원으로 목표 대비 57%에 그쳤으나, 93억 7백만원(달성률 186%)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비교적 단기간(1년이내) 내에 유의미한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됨.

< 서울창업센터 관악 주요성과 >

(단위: 백만원, 명, 건)

구 분	매출액	투자유치	일자리창출	지식재산권	해외진출
목 표	6,000	5,000	-	-	-
실 적	3,431	9,307	89	36	4
달 성 률	57%	186%			

※ 2021.12.31.기준

다. 민간위탁의 타당성 여부

- 서울시는 관악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8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함.
- 관악센터는 스타트업 기업 육성·관리부터 창업시설 간 네트워킹, 인근 서울대·중앙대·숭실대와의 창업 연계 등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을 해야 하는 만큼, 4차 산업혁명과 창업생태계에 대한 경험과

전문인력, 창의성을 보유한 민간기관의 운영이 효율적일 수 있음.

- 현재 관악센터 수탁기관인 한국능률협회는 센터 최초 개관 시기(2021년) 부터 운영을 맡아 업무체계를 마련하였고, SKT-서울대 등과 민·관·학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입주기업 투자유치 목표를 초과 달성 등 성과를 창출함.
- 그러나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서 근로여건 및 노동안정 노력 부진, 협약사항 위반, 필수교육 미이수 등으로 낮은 점수(75.11점²⁾)를 받아 관악센터 민간위탁 적정성 평가에서 공모를 통한 재위탁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이 결정됨.
 - 민간위탁 협약상의 정규직 의무 고용비율(25% 이상³⁾)에도 불구하고 종합평가 당시 관악센터 수행인력 4명 모두 비정규직이었음.
 - 기관 신규 채용공고를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일자리포털, 민간취업포털 등 2곳 이상 게시했어야 하나 미공시했으며, 필수교육인 인권·청렴 교육 등을 미이수함.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1.10.)」에 따르면, 종합성과평가 결과 75점 미만은 민간위탁 재계약 불가함.

3)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협약서(시설형)」 제9조 제7항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에 따라 수탁사무 관련 노동자 정규직 비율을 2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사업을 수행하면서 협약내용의 준수, 필수사항의 이행 등 기본적인 약정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교육과 함께 엄격한 관리·감독이 요구됨.
- 또한, 민간위탁 종료시한(8월 말)을 앞두고 촉박하게 재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심사보류나 부결이 될 경우 사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행정의 적기성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6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창업센터 관악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228
----------	------

제출년월일 : 2022년 5월 25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관악에 집적된 우수한 인재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성장동력 분야의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고자 2020년 7월부터 「서울창업센터 관악」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이 2022년 8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역량있는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유치·사업화, 판로개척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개요

시설명	서울창업센터 관악
소재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545(봉천동 1662-7)
시설규모	대지 327.4㎡, 건물 993.86㎡(1동)
시설용도	창업지원시설(입주공간, 공유공간, 회의공간 등)

나. 사업개요

- 위탁사무 : 서울창업센터 관악 운영
- 위탁기간 : 2년 4개월(2022.9.1.~2024.12.31.)
- 위탁유형 : 시설형 민간위탁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548백만원('22년 예산)

다. 민간위탁(재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18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 추진경위

- 2019. 9. : 제289회 임시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2020. 6. :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 민간위탁 협약체결
- 2022. 5. :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개최·의결(재위탁 조건부 동의)
- 2022. 5. : 민간위탁 재위탁 방침 수립

○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필요성

- 서울창업센터 관악은 관악에 집적된 인재와 기술을 활용하여 유망 창업기업의 사업화, 민간 VC 활용 투자유치 연계, 판로개척 등 창업기업의 육성 업무를 수행해 왔음

- 2022년 관악구 낙성대동 등 8개 행정동이 “관악S밸리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는 등 인근 대학의 캠퍼스타운, 시·자치구 창업지원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이 보다 높아졌음
- 이에 산학 및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신성장동력 기업 육성에 탁월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라.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서울창업센터관악의 입주기업 보육 등 사업추진 전반
 - 입주기업 심사·선발 등 창업기업 보육지원
 - 운영 활성화를 위한 창업보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 산업간 융합 등 신성장동력 분야 창업지원을 위한 기획, 관리, 홍보 등
 - 졸업기업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 산·학·연 협력을 통한 창업지원 네트워크 구축방안 수립
 - 우수대학(서울대, 중앙대, 숭실대 등)이 입지한 지역특성 활용 창업활성화 방안
 - 창업공간 및 사업화 프로그램 지원, 민간 VC 투자유치, 인근 창업지원센터 연계방안
- 서울창업센터관악의 관리 및 운영 전반
 - 안전대책 수립, 재난대책 매뉴얼 작성 등 시설물 안전관리 총괄
 - 청소, 경비 및 시설 유지보수 총괄 등(안전점검, 보안관리 등)
- 기타 위·수탁사무와 관련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한 사항

마.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22.5.12. 개최)심의 결과 : **적정**(조건이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18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②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2년 민간위탁금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창업정책과 남부권창업팀 고중석 (☎ 2133-4876)

김유림 (☎ 2133-4879)